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기준



2025.02.19

주식회사 하나은행

목 차

제 1 편. 총칙	4
1. 목적.....	4
2. 용어의 정의.....	5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5
제 2 편. 투자자 구분 등	6
4. 방문 목적 확인	6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6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6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7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7
제 1 장. 투자자정보	7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7
제 2 장. 투자권유	8
9. 투자권유 절차	8
10. 계열회사 등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8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8
12.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9
제 3 장. 설명의무	10
13. 설명의무.....	10
14.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2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3
15. 투자성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13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3
16-① 계약서류의 교부.....	13
16-② 청약의 철회.....	14
16-③ 위법 계약의 해지.....	14
17. 손실보전 등의 금지.....	15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5
19.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7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 행위.....	17
제 7 편.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18
21. 설명의무.....	18
22. 환매조건부 매도 거래의 성립 및 환매수.....	18
23. 환매조건부 매도 거래의 통지.....	18
제 8 편. 신탁업자의 투자권유 기준.....	19
24. 특정금전신탁의 판매.....	19
제 9 편.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 기준.....	19
25.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판매.....	19
제 10 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19
2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19
제 11 편. 방문판매업무세칙.....	19
27. 투자성상품 방문판매.....	19
제 12 편. 판매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제공.....	19
28. 판매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제공.....	19
별지.....	21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기준

제정 2009. 02. 04
개정 2009. 12. 22
개정 2011. 06. 20
개정 2012. 04. 23
개정 2012. 07. 11
개정 2013. 06. 10
개정 2013. 10. 14
개정 2014. 06. 02
개정 2015. 01. 06
개정 2015. 01. 29
개정 2016. 04. 01
개정 2016. 06. 07
개정 2016. 07. 04
개정 2017. 01. 02
개정 2017. 04. 03
개정 2020. 02. 21
개정 2020. 04. 29
개정 2021. 01. 04
개정 2021. 03. 25
개정 2021. 05. 10
개정 2022. 07. 22
개정 2022. 12. 08
개정 2023. 03. 02
개정 2023. 05. 10
개정 2023. 09. 01
개정 2023. 11. 21
개정 2024. 03. 01
개정 2024. 05. 31
개정 2024. 07. 31

개정 2024.08.30

개정 2024.10.30

개정 2024.12.11

개정 2024.12.26

개정 2025.02.19

제 1 편 총칙

제 1 조(목적)

이 투자권유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DD8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업무」 8.18.1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은행의 임직원과 은행으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 3 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 투자자 구분 등

제 4 조(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 2 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 9 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된다.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별지 제 1 호)를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 7 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자의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투자자 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 11 조제 6 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장 투자자정보

제 8 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고령투자자(만 65 세 이상)의 경우에는 투자자성향 파악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2 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별지 제 1-1 호][투자자정보분석결과표]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별지 제 7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 6 호, 위임장)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상품 가입 불가함을 안내한다.
5. 임직원 등은 재산정 혹은 재검증 결과 추가적립 가능 펀드 혹은 금전신탁(지정형)의 위험등급이 1 등급으로 상향된 경우 추가적립 시점(자동적립은 자동적립 서비스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을 재 실시해야 하며, 투자자의 투자성향등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적립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

제 2 장 투자권유

제 9 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 등은 은행이 정한 [별지 제 2 호]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 등은 신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한 성격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판단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F, DLF

제 10 조(계열회사 등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해야 한다.

가.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를 말한다.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2)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 229 조 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은행이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2. 그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 11 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지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9 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 174 조, 제 176 조 또는 제 178 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 17 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 3 장 설명의무

제 13 조(설명 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 19 조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신규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 또는 취약투자자 등에게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다.

5. 임직원 등은 제 1 항 부터 제 4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 124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 249 조의 4 제 2 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0. 임직원 등은 펀드 판매시 예금과 비교하여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예금 상품 설명 확인'을 통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 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5 조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1. 은행은 법령에서 규정한 아래의 각목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 13 호]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금소법 §19①제 1 호,나목 3, 시행령(§13③) 및 감독규정(§12)

가. 기초자산의 변동성,

나. 신용등급,

다. 상품구조의 복잡성,

라.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마. 환매·매매의 용이성,

바. 환율의 변동성,

사.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 제 13 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3.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 단계(매우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로 분류한다.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5. 은행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6 조-①(계약서류의 교부)

1. 은행은 투자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은행은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은행은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은행은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 16 조-②(청약의 철회)

1. 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체결할시, 계약서류를 제공한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일반투자자가 7 일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청약철회 신청서'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영업점 앞 제출 또는 우편, 팩스의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영업점 앞으로 전화를 통해 알려야 한다.

3. 은행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하며,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③(위법 계약의 해지)

1. 은행은 금소법 제 17 조(적합성 원칙)제 3 항, 제 18 조(적정성 원칙)제 2 항, 제 19 조(설명의무)제 1 항·제 3 항, 제 20 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 1 항 또는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은행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은행은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7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8 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 권유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 거래 시 권유 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 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은행의 인수 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

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 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은행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임직원 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 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차.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 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아.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차.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타.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 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 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20 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 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법령에서 1 및 2 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4.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제 7 편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제 21 조(설명 의무)

1. 임직원은 고객에게 환매조건부매도를 권유하는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가. 가입대상, 최소가입금액, 가입기간, 이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나. 환매수 가액 등 환매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라. 양도 및 질권설정에 관한 사항

마. 약관에 관한 사항

바.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종류 및 보관, 종목대체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환매조건부매도 거래의 성립 및 환매수)

1. 환매조건부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은행에게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고객은 약정기일에 은행에게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환매조건부매도 거래의 통지)

1. 은행은 고객과 환매조건부매도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매조건부매도 거래 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가. 환매조건부매도 가액

나. 환매수의 약정일자 또는 기한

다.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라.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마. 환매조건부매도 대상증권의 시장 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은행은 환매조건부매도 거래 성립 내용을 통장, 매도확인서,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도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8 편 신탁업자의 투자권유기준

제 24 조(특정금전신탁의 판매)

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포함)」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9 편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기준

제 25 조(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판매)

은행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판매 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실무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제 26 조(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시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편 방문판매업무세칙

제 27 조(투자성 상품 방문판매)

은행은 투자성 상품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업무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2 편 판매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제공

제 28 조(판매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 60 조, 영 제 62 조제 1 항제 1 호,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 및 별표 12

2.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 금소법시행령 제 26 조 참조)를 10 년(계약 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 28 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 26 조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제 3 항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위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 28 조제 3 항, 제 4 항 및 금소법시행령 제 26 조제 4 항

제 13 편 수수료의 부과기준 공시

제 29 조(수수료의 부과기준)

금융투자회사는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원금
손실가능
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전면)

본인확인	상담자	등록자	책임자

--	--	--	--

고객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명	대리인 생년월일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 수령방법 및 고객정보확인	발송매체 ☐ 서면수령 ☐ 이메일 ☐ 카카오톡(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LMS발송) 정보확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전산 인자란 선택한 매체의 고객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속행위 규제 유의사항 안내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취약소비자* 등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구속행위” 여부 판정에 따라 “신용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아래의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상품 신규 후 1개월 이내 대출 거래
- 대출 거래 후 1개월 이내 투자상품의 신규

※취약소비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후견인 또는 피안정후견인

1. 금융 취약소비자 우선 설명 신청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따라 특정 소비자(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미성년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특정 소비자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를 당행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체크)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 우선 설명 대상 에서 제외)
☐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기타	
☐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가능범위는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상품의 중도해지 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상품 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불이익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 가입 전 투자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 투자설명서, 특정증권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권유문서와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등	



원금
손실가능
상품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표(손님교부용)

투자자정보 확인일자		투자성향		투자자정보분석 점수	
고객명(고객번호)		대리인명(고객번호)		본인과의 관계	
상담직원명(직원번호)		등록직원명(직원번호)		등록점명(등록점번호)	
직전 투자자정보 확인일자		직전 투자성향		직전 투자자정보분석 점수	
분석결과표 수행방법		수행 매체 정보	이메일 주소/휴대폰번호		

1. 금융 취약소비자 우선 설정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특정 소비자 구분	
---------------	--	-----------	--

2. 투자자 구분 및 투자자정보 사용여부

투자자 구분	
투자자정보 사용여부	

3. 투자자정보 확인

I. 투자자의 재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1. 연월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기준)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 이하 ② 20% 이하 ③ 30% 이하 ④ 50% 이하 ⑤ 50% 초과
3. 총 금융자산대비 투자상품의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 이하 ② 10% 이하 ③ 15% 이하 ④ 20% 이하 ⑤ 20% 초과
4. 고객님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은 매출액 기준)	개인 :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7천만원 이하 ④ 9천만원 이하 ⑤ 9천만원 초과 법인 : ① 1억원 이하 ② 3억원 이하 ③ 5억원 이하 ④ 10억원 이하 ⑤ 10억원 초과
5.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언급 되어 주 수입원임

II.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향 및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 파악을 위한 질문

6. 고객님의 투자경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채권형 펀드, 원금보존주구형 ELI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③ 혼합형 펀드, 원금 일부 보존 주구형 ELIS,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 ④ 이베스 주식형 펀드, 원금 비보존 ELI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 ⑤ 국내외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ELW, 선물옵션, 주식 등
7. 고객님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ELIS 등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②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③ 주식, 채권, 펀드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음 ④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음

III.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목적 및 위험에 대한 태도 질문

8.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목적자금 마련(결혼자금, 교육자금 등) ② 사후예정 자금(연금, 임대차보증금)단기운용 ③ 노후자금 마련 ④ 여유자금 투자 ※ ②번 답변 선택 시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최저위험)', 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9. 현재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기대수익 대비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도 감내할 수 있음 ② 투자원금에서 20%초과~100%이내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 ③ 투자원금에서 20%이내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 ④ 투자원금에서 10%이내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 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을 보전되어야 함 ※ ②번 답변 선택 시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최저위험)', 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10.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 ~ 3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6개월 미만 ⑥ 가입상품 특정 만기일까지 보유(ELF, ELT, 복표전환형 등)

IV. 파생결합증권 관련 상품 가입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

11.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투자상품(ELF, DLF, BLT 등)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전 금융기관)	① 투자경험 있음 ()년 ()월 ② 투자경험 없음
---	-------------------------------

[참고]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투자성향	투자성향 설명	적합한 상품 위험등급(펀드,신약)
공격투자형 (81점 이상)	시장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 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매우높은위험(1등급) - 매우높은위험(6등급)상품
적극투자형 (68점~80점)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다소높은위험(3등급) - 매우높은위험(6등급)상품
위험중립형 (55점~67점)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보통위험(4등급) - 매우높은위험(6등급)상품
인정주구형 (43점~54점)	투자원금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 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낮은위험(5등급) - 매우높은위험(6등급)상품
인정형 (42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매우낮은위험(6등급) 상품

- 본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는 고객님의 부정확한 투자자정보 제공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고객님의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의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저의 하나은행에 의하여 기밀로 보호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별지 제 2 호]

적합성 판단 기준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통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I. 다음질문은 투자자의 재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연령대

① 19 세 이하(2.5) ② 20 대(2.5) ③ 30 대(2.0) ④ 40 대(1.5) ⑤ 50 대(1.0) ⑥ 60 대 이상(0.5)

2.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일임형 필수질문 / 점수 배점 없음

① 10% 이하 ② 20% 이하 ③ 30% 이하 ④ 50% 이하 ⑤ 50% 초과

3. 총 금융자산대비 투자상품의 비중

① 5% 이하(1.0) ② 10% 이하(2.0) ③ 15% 이하(2.5) ④ 20% 이하(3.0) ⑤ 20% 초과(3.5)

4. 연소득 현황(법인은 매출액 기준) - 일임형 필수질문 / 점수 배점 없음

개인 ① 3 천만원 이하 ② 5 천만원 이하 ③ 7 천만원 이하 ④ 9 천만원 이하 ⑤ 9 천만원 초과

법인 ① 1 억원 이하 ② 3 억원 이하 ③ 5 억원 이하 ④ 10 억원 이하 ⑤ 10 억원 초과

5. 향후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5.5)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3.5)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연금 등이 주 수입원임(1.0)

II. 다음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 및 금융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복 응답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1)

② 채권형 펀드, 원금보존추구형 EL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2.5)

③ 혼합형 펀드, 원금 일부 보존추구형 ELS,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3.5)

④ 인덱스 주식형 펀드, 원금 비보존 EL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4.5)

- ⑤ 국내외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펀드, ELW, 선물옵션, 주식 등(5.5)

7.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 ① ELS 등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5.5)
 ②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4.0)
 ③ 주식, 채권, 펀드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음(2.5)
 ④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음(1.0)

Ⅲ. 다음은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목적 및 위험에 대한 태도 질문입니다.

8.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목적

- ① 목적자금 마련(결혼자금, 교육자금 등)(1.0) ② 사용예정자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단기운용(2.0) ③ 노후자금 마련(3.0)
 ④ 여유자금 투자(4.0)

※ ②번 답변 선택 시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최저위험)」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9.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기대수익 대비 감내가능한 손실 수준

-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도 감내할 수 있음(10.0)
 ② 투자원금에서 20%초과~100%이내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8.5)
 ③ 투자원금에서 20%이내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6.0)
 ④ 투자원금에서 10%이내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음(3.0)
 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1.0)

※⑤번 답변 선택 시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최저위험)」상품만 가입 가능

10.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

- ① 3년 이상(2.5) ② 2년 이상~3년 미만(2) ③ 1년 이상~2년 미만(1.5)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1) ⑤ 6개월 미만(0.5)
 ⑥ 가입상품 특정 만기일까지 보유(ELF,ELT,목표전환형 등)(2.5)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0번까지(2,4번 질문 제외)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9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단, 법인의 경우 2번부터 10번까지(2,4번 질문 제외)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 합산(총점 36.5점)

* 2번 금융자산 비중, 4번 연소득 현황 질문은 일임형 필수 질문으로 점수 배점 없음

(예) 1번부터 10번까지의 합이 28.5점인 경우, $28.5/39 \text{ 점} \times 100 = 73.08 \text{ 점}$

※ 아래의 경우 스코어링 점수와 상관없이 “안정형”으로 분류한다.

- 8 번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이 '② 사용예정자금(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단기운용' 선택하는 경우
- 9 번 기대수익 대비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의 답변이 '⑤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선택시

▶ 투자성향분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43 점	43 점≤ <55 점	55 점≤ <68 점	68 점≤ <81 점	81 점≤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구분	성향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추구형	투자원금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유형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유형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유형

[별지 제 3 호]

▶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구분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 4 호]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매우 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채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 ~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펀드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MMF

선물옵션	선물옵션	
------	------	--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위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 분류를 세분화하거나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의 추가 분류 가능

[별지 제 5 호]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은행보관용>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본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하나은행에서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이행 확인

투자자에게 설명 드린 모든 상품의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가입 상품 주요 정보에 기재된 모든 상품과 관련된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투자자	인(서명)
판매직원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1. 가입 상품 주요 정보

번호	계좌번호 금융투자상품명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유동성 위험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1					
2					
3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최대 손실 가능 금액	※ (판매회사)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 투자대상자산 및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또는 97.5% VaR에 따라 분류됩니다. (2) 위험등급 의미 및 유의사항 참고 ※ 유동성위험 : 중도환매 수수료 관련 세부내용은 (간이)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은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전액	

2.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수익률 변동성	97.5% VaR	
매우높은 위험(1등급)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5% 초과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높은위험(2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5% 이하	5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소높은 위험(3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5% 이하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통위험(4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낮은위험(5등급)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 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이하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매우낮은 위험(6등급)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0.5% 이하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손실발생율이 낮으나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설정 후 3년 미만 펀드는 투자자산 기준,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는 위험등급 재산정 시점에 따라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 또는 97.5% VaR 모형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24.3.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펀드의 위험등급은 97.5% VaR 모형 기준으로 산정하며, 결산일 도래 전까지는 직전 기준인 수익률 변동성으로 산정합니다.)

② 판매회사는 한술위험 및 유동성위험, 시장장황 급변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보다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97.5% VaR 모형 : 최대손실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장계수(√250)를 곱해 산출

3-19-0005(8-1) (2024.05 개정)
 (보존기간 : 영자일로부터10년)
 은행감시인 사전확인일 제 2024-바예금-02185 호 (2024.04.11)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은행보관용>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3.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집합투자증권(펀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투자성 상품」에 해당합니다.

예금성 상품 (예·적금)과 구별되는 특징	
원금 비보장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발생가능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수발생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지시 불이익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관련 규정 제한 없이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4. 투자자 권리 보호 안내 및 FAQ

구 분	내 용													
속려 제도 및 속려 확인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 익영업일부터 2영업일의 속려기간을 부여하고 3영업일에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합니다. - 계약체결 의사확인 후 청약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통화 또는 알림톡(SMS)으로 이루어지고 확인 당일 자 17시 까지 청약확정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며, 청약확정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청약은 자동 취소되고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결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약 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인 일반금융소비자는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속려의사 확인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 법인인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적 의사표시, 전화 및 우편/팩스 발송 후 전화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은행이 받은 금전, 재화 등은 반환 됩니다.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rowspan="2">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th><th colspan="2">고난도 금융투자상품</th></tr> <tr> <th>(모집기간 있는 경우)</th><th>(모집기간 없는 경우)</th></tr> <tr> <td rowspan="2">일반금융소비자</td><td>개인 (속려 대상)</td><td>속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td><td>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td></tr> <tr> <td>법인 (속려 비대상)</td><td>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td><td>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td></tr> </table>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규 과정에서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데 동의 하던 뒤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 주의 : 청약철회권 행사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7일째인 설정일 전 영업일 17시 까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 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청약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단, 외화로 투자되는 펀드 상품은 16시까지]	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모집기간 있는 경우)	(모집기간 없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속려 대상)	속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법인 (속려 비대상)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청약 철회권 행사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모집기간 있는 경우)	(모집기간 없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속려 대상)	속려의사 확인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법인 (속려 비대상)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 대상 아님											
자료 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료는 10년 보관하는데 일부 자료의 경우 5년까지 만 보관하며 해당 보관기간 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의 목적·범위·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은행보관용>

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 (핵심/요약)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향 등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5가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단, 계약체결부터 5년 이내인 계약)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하나은행 투자상품 본부에서 판매를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 및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이 반변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	Q1.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2. 펀드의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 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편입된 주식 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 (재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 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 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 분배금 이라고 하며, 이익 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 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상품 설명 안내

구 분	내 용
기대수익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상황 및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에 따라 일정 종속 시 수익이 확정될 수 있음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 추정액	- 펀드는 편입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라 원금의 0% ~ 100% (원금 전액손실)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 ELF (DLF)는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항목 참고 -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보수	펀드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항목 참고
계약종료 요건	ELF (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과 같이 계약상 만기가 있는 펀드들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 종료 요건은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항목 참고
목표시장 설정 근거	- 목표시장은 고객 유형, 지식과 경험, 위험추구성향, 보유가능기간, 손실감내능력, 투자목적 등 고려한 투자 기간을 감안하여 설정합니다. - 목표시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7 호] 대리인의 종류에 따른 징구 서류

본인	대리인	징구서류
성년자	가족	집합투자증권용 위임장, 가족관계확인서류, 본인/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 3 자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날인 된 집합투자증권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부&모 방문시 : 부&모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법정대리인 부 or 모 방문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기타	신규불가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제 3 자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날인 된 집합투자증권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에 의한 대리인 거래시 투자자 본인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 ‘본인 앞 위임사실’을 확인하였음에 대하여 기재 필수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포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자

예)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의 서류는 최근 3 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함

※ 미성년자 명의 신규 시 부 또는 모가 내점 하였을 경우 부 또는 모 일방이 다른 친권자의 명의를 함께 연서하여 공동명의로 전/장표를 작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

(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가능함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서 -

전문투자자 전환신청서

본인은 하나은행과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전문투자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언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험회피(예지)목적 이외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및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로 취급되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전문투자자로 취급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일반투자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로서 취급됨으로써 증가하는 모든 위험 및 손실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전문투자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고객 유형	1. 주권상장법인 : _____ 상장코드 : _____	2. 전문투자자 확인증 보유자 : _____ 등록번호 : _____ 발급일자 : _____ 유효기간 : _____
----------	-----------------------------------	--

첨부서류) 1 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2 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고객) / 실명확인증표(개인고객) 및 전문투자자 확인증 사본

[신청인 정보]

고객명/법인명 :

대표이사 :

(법인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신청 담당자 성명 :

(서명/인)

신청 담당자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하나은행

지점

-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서 -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서

본인확인	상당자	등록자	책임자

고객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 전문투자자 등록시 유의사항

전문투자자	1.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 시 향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전문투자자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 은행에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자에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등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또는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자필기재
-------	---

신청인(본인)은 상기 신청사항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고 객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인(서명)



[별지 제 9 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은행은 만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 80 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 적용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2.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① 은행은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① 은행은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은행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 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 등을 들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① 은행은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판매자 외 영업점장,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은행이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① 은행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②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단한다.

③ 은행은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단한다.

3.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① 은행은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② 은행은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적정성 사전 확인 및 초고령투자자 조력활용제도 수행하는 관리직 직원은 '고령투자자 보호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해당 업무를 이행 할 수 없다. (2023.3.2 시행)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① 은행은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①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①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기준에 따른 녹취 강화

① 만 65 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펀드 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시부터 판매 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한다.(MMF 제외)

(6) 지정인 알림 서비스 대상 강화

① 만 65 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펀드 판매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인 앞으로 펀드 가입 사실을 안내 할 수 있다. (MMF 제외)

4.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① 은행은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은행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① 은행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등에게 조력을 받을 경우 함께 방문한 조력자가 만 80 세 이상 초고령자일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2023.3.2 시행)

② 은행은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① 은행은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은행은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한다.

[별지 제 10 호] [만 65 세~79 세] 고령투자자확인서 및 체크리스트



【만65세~79세】 고령투자자확인서(집합투자증권용)

☒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확인 ☐ 확인

본인은 본인이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임을 안내 받았으며,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도지원 팀/172 344/0
721344/0 이진희 [투자
“진희” [투자상품전
상품전환부] 제

☒ 고령투자자 조력자 연락처 지정 확인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본인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자의 연락처 제공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 [조력자 방문] 조력자 연락처 제공 희망

☐ [조력자 방문] 조력자 연락처 제공 미희망

☐ [조력자 미방문] 조력자 연락처 제공 미희망

☒ 【조력자 방문】조력자 연락처 제공 희망시 작성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조력자 확인 및 지정용]

(주)하나은행 귀중

하나은행과의 (비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확인 및 지정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고객의 계좌종료일까지 보유 · 이용 위 보유기간에서의 계좌종료일이란 “계좌만기 도래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령투자자의 계좌종료 상태”를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조력자 지정용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 개인(신용)정보	조력자 성명, 연락처, 고객과의 관계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조력자와 고객과의 관계 : _____

조력자 성명 : _____ 서명(인)

조력자 연락처 : _____

20 년 월 일

영업점명 :

부(지점) 날짜 :

고객명 :

서명(인)

판매직원 :

성명 :

대리인 :

서명(인)

5-19-0004(2-1) (2023.03 개정)
(보존번호 : 예지(일부) 10년)





원금
손실가능
상품

고령투자자 체크리스트(집합투자증권용)

【판매자 외】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 사전확인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신규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직직원(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이 해당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고객의 이해여부 및 상품가입 등의 투자권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해당란 'V' 표시

확인 사항		예	아니오
1.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직전 결과 대비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계정 0651] 투자성향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유의사항 (주1) 점검		
2. 투자자금의 성격	고객이 투자하는 자금이 향후 의료비, 사업자금, 경조사 및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자금이거나 노후자금으로써 고객의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됩니까?		
3. 투자권유 적법성	상담직원이 본 상품을 고객께 부적절하게(상품판매를 위한 투자자성향 변경 또는 유도 등) 권유하였습니까?		
4. 주요설명서의 이해	고객이 본 상품의 기본적인 손익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중도해지가능 여부 등에 대해 상담직원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5. 건강 및 인지 능력	현재 고객의 건강 상태 및 아래 예시항목의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주요 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등		

※ 사전확인 유의사항

▶ (주1) 투자자성향 변동시에는 고객의 근황 등을 문의하여 변동 내용을 재확인 합니다. 만일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 원금손실 발생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확인사항 2~5번」 중 하나라도 '예' 체크 있는 경우

사전확인 결과, 권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 및 은행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신규판매를 중단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직직원】직위 성명 서명(인)



[별지 제 10-1 호] [만 80 세이상] 초고령투자자확인서 및 체크리스트

원금 손실가능 상품	[만80세 이상] 초고령투자자확인서(집합투자증권용)						
■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확인 ☐ 확 인 투자자 확인란 본인은 본인이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임을 안내 받았으며,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초고령투자자 조력자 연락처 지정 확인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시 본인의 신변, 건강상태 등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함께 방문한 조력자의 연락처 제공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 [조력자 방문] 조력자 연락처 제공 희망 ☐ [조력자 방문] 조력자 연락처 제공 미희망 ☐ [조력자 미방문] 조력자 연락처 제공 미희망 ■ 초고령투자자 조력제도 활용 안내 초고령투자자가 고객 본인의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상품 설명을 같이 들으시는 조력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직직원 (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알책임자)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력자 방문] 가족 등 조력 활용 희망 ☐ [조력자 미방문] 관리직직원 조력 활용 희망	조력자 작성란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조력자 확인 및 지정용] (주)하나은행 귀중 하나은행과의 (비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수집 · 이용 목적</td> <td>-초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확인 및 지정 -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 듣고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확인 및 지정</td> </tr> <tr> <td>보유 및 이용기간</td> <td>해당 고객의 계좌종료일까지 보유 · 이용 계좌종료일이란 “계좌 만기 도래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의 계좌 종료 상태”를 말합니다.</td> </tr> <tr> <td>거부 권리 및 불이익</td> <td>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조력자 지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td> </tr> </table> ■ 수집 · 이용 항목 ■ 개인(신용)정보 조력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과의 관계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조력자와 고객과의 관계 : _____ 조력자 생년월일 : _____ 조력자 성명 : _____ 서명(인) 조력자 연락처 : _____ ■ 가족 등/관리직 직원 조력 확인란 조력자/관리직 직원(_____ : 자필 기입)는(은) 본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와 함께 듣고 투자자의 본 상품에 대한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 등]조력자 성명 : _____ 서명(인) [관리직 직원]조력자 직위 : _____ 성명 : _____ 서명(인)	수집 · 이용 목적	-초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확인 및 지정 -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 듣고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확인 및 지정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고객의 계좌종료일까지 보유 · 이용 계좌종료일이란 “계좌 만기 도래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의 계좌 종료 상태”를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조력자 지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초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확인 및 지정 -투자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 듣고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확인 및 지정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고객의 계좌종료일까지 보유 · 이용 계좌종료일이란 “계좌 만기 도래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의 계좌 종료 상태”를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조력자 지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영업점명 : _____ 부(지점) 날짜 : _____	고객명 : _____ 서명(인) 판매직원 : _____ 성명 : _____ 대리인 : _____ 서명(인)						
5-19-0013(2-1) (2023.03 개정) (보존기간 : 영지(유효)부터 10년)							

원금
손실가능
상품

초고령투자자 체크리스트(집합투자증권용)

【판매자 외】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 사전확인용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신규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직직원(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이 해당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고객의 이해여부 및 상품가입 등의 투자권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해당란 'V' 표시

확인 사항		예	아니오
1.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직전 결과 대비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계정 0651] 투자성향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유의사항 (주1) 점검		
2. 투자자금의 성격	고객이 투자하는 자금이 향후 의료비, 사업자금, 경조사 및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자금이거나 노후자금으로써 고객의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됩니까?		
3. 투자권유 적법성	상담직원이 본 상품을 고객께 부적절하게(상품판매를 위한 투자자성향 변경 또는 유도 등) 권유하였습니까?		
4. 주요설명서의 이해	고객이 본 상품의 기본적인 손익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중도해지가능 여부 등에 대해 상담직원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5. 건강 및 인지 능력	현재 고객의 건강 상태 및 아래 예시항목의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주요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등		

※ 사전확인 유의사항

▶ (주1) 투자자성향 변동시에는 고객의 근황 등을 문의하여 변동 내용을 재확인 합니다. 만일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 원금손실 발생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확인사항 2~5번」 중 하나라도 '예' 체크 있는 경우

사전확인 결과, 권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 및 은행이 투자권유를 할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신규판매를 중단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직직원】 직위 성명 서명(인)



[별지 제 10-2 호]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령투자자 조력자 연락처
확인(집합투자증권용)]

	<table border="1"> <tr> <th>본인확인</th> <th>담당</th> <th>책임자</th>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선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고령투자자 조력자 연락처 확인(집합투자증권용)]									
(주)하나은행 귀중 * 귀 행이 집합투자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연락처 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력대상고객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거래종료일까지 보유 · 이용 * 위 보유 · 이용 기간에서의 거래종료일이란 "펀드 만기 도래일이 아닌 실질적인 고객의 계좌 종료 상태"를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집합투자증권 조력자 연락처 지정"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조력자에게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 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한 사전연락이 불가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 일반개인정보	조력자 성명, 연락처, 고객과의 관계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조력자와 고객과의 관계 : _____ 조력자 성명 : _____ 서명(인) 조력자 연락처 : _____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 : _____ 서명(인) 대리인 : _____ 서명(인)									
									
5-19-0085(1-1) (2023.11 제정) (보존기간 : 예지일로부터 10년)									

[별지 제 11 호] 적합성 보고서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은행보관용>

적합성 보고서

대상고객	☐ (초)고령투자자 ☐ 신규투자자
------	--

고객명		고객번호	
-----	--	------	--

■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 문항별 응답결과

문항	내용
고객 연령대	
고객 수입원	
투자경험	
금융상품 지식수준	
손실 감내수준	
투자가능기간	
파생투자경험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위험도

투자성향	
투자성향 설명	

■ 권유펀드

상품명	
-----	--

5-19-00134-01(2020.07 개정)
 (비공표본) : 액자일부 제외





■ 투자권유 사유 및 투자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ELF/ DLF 핵심 유의 사항	공동위험 (중도완매/신용위험등)	
	투자대상기초자산	
	상품의손익구조상 특별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 핵심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 펀드의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 보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고 객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작성일자 :

판매자 :

[별지 제 12 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신청서 (집합투자증권용)

원금 손실가능 상품	(은행보관용)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신청서(집합투자증권용) [만65세 이상 금융소비자]
■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 신청 ☐ 미신청 - 하나은행은 만65세 이상 고객이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족 등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을 휴대폰 (알림톡)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등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하나은행에서 고객님의 가입일자, 펀드명, 가입금액 등의 가입내용을 (알림톡)문자메세지로 송부 드리며 고객님의 지정인에게 해당 (알림톡)문자메세지를 전달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서비스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문자발송내용] 펀드명, 가입금액, 판매자명, 가입 지점(연락처) 등	
20 년 월 일	
판매지점 : 판매직원 :	고객 : 대리인 :
	서명(인) 서명(인)
5-19-0012(1-1) (2023.11 개정) (부록연한 : 해당일로부터 10년)	

[별지 13 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 13 조제 2 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관계법규] 금소법 시행령 §13②

2. 위험등급 산정 주체

(1) 은행은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19①제 1 호나목 3

(2) 은행에서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은행은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12②제 3 호

(3) 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은행이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은행은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펀드 위험등급 산정 및 적정성 검증 업무 매뉴얼」 따른다.

3. 위험등급 체계

(1) 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위험등급 산정방식

(1) 은행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관계법규] 금소법 §19①제 1 호나목 3, 시행령(§13③) 및 감독규정(§12)

①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Ⅱ.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 단계로 산정한다.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②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 (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35 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 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 등급(저위험)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 1)} , AAA~AA-		A+ ~ A-	BBB+~BBB-	BB+~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1)자본시장법 제 118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 등급을 1 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 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은 설명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 등급인 경우 2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 등급인 경우 그대로 1 등급 부여

⑦ 은행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Ⅱ.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1)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 (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 한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1) 은행은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1) 은행은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2) 은행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 3 제 2 호

Ⅱ.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1)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1)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 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 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 등급 (고위험)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3)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1)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2)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 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정금전신탁

(1)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①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②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③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1-2 조의 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4. 투자일임계약

(1)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3.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5. 기타

(1) 은행은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